

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8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10. 9
- 다. 상 정 일 자 : 2008. 10. 28 (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4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환경위생과장 임석진)

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기구인 환경보전 관련 협의회 운영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례를 제·개정하고 주민의 환경보전의식고취 및 환경시책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관련법령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, 제32조, 제37조

4. 주요내용

- 가.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(안 제13조)
- 나. 환경보전관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 건은

-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'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조례'에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
-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원만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정비·보완 차원에서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생각되므로

위 조례 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